2022-10-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대전지방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20고단3584 판결 모욕,공무집행방해,상해

대 전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건 2020고단3584 모욕, 공무집행방해, 상해

피고인 A

검사 주혜진(기소), 전원영(공판)

변호인 변호사 김진욱

판결선고 2020. 11. 26.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.

이 유

범죄사실

1. 모욕

피고인은 2019. 10. 28. 23:40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앞길에서 아내와 불화를 겪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가던 고등학생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12신고를 받은 세종경찰서 D지구대 경위 E, 경장 F(39세)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 C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F에게 "좆밥이구나, 좆밥이냐?, 이런 씨발년아 이름이 뭐냐, 꺼져 이 씨발년아, 에이 씨발년아, 야이 씨발년아 내가 돈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아냐, 친군데 좆밥이라서, 꺼져 이 씨발년아."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.

2.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

가.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출동경찰관인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F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질 것처럼 행세하고,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며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.

나. 피고인은 2019. 10. 29. 00:15경 위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고 D지구대로 호송되어 오던 중 위 경장 F에게 "너 차로 치어 죽여버릴 거야, 너 내가 차로 쳐 죽여 버릴 거야."라고 협박하고, D지구대로 인치된 후 다시 경장 F에게 "너 칼로 찔러 죽여 버릴 거야, 너 진짜 칼로 찔

2022-10-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러 죽여 버릴 거야."라 면서 계속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피의자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.

다. 피고인은 위 나.항과 같이 세종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된 후 세종경찰서로 신병을 이관하기 위해 출동한 세종경찰서 G 경위 H, 경장 I, 경장 I 등과 함께 I 2019. 10. 29. 01:03경 I 경찰 호송 승합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중, 갑자기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피해자인 경장 I (34세)의 코와 입 부위를 향해 세게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I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, 타박상을 가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-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- 1.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
- 1.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
- 1. I, F,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(순번 16, 22, 23)
- 1. K, C의 진술서
- 1. 진단서, 의무기록사본
- 1. 피해자 사진, CD(차량 내 휴대폰 촬영), 약도(메모장), 사진(피의자 휴대폰), CD 1장, 영상 캡처 사진, 112신고사건 처리표
- 1. 고소장
- 1. 내사보고(피의자가 경찰관 폭행 직후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), 내 사보고(피의자가 D 지구대 인치 당시 촬영한 동영상 분석/CD 첨부), 내사보고(피의자 가 메모장에 그린 좌석도 촬영사진 첨부), 내사보고(피의자 소유 휴대폰 사진 촬영 첨부), 수사보고(피해 경찰관 진단서 등 첨부), 수사보고(신고 출동 경찰관 상대 모욕 등 추가 혐의)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

형법 제257조 제1항(상해의 점), 각 형법 제136조 제1항(공무집행방해의 점), 형법 제311조(모욕의 점)

1. 상상적 경합

형법 제40조, 제50조

- 1. 형의 선택
- 각 징역형 선택
- 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양형의 이유

- 1.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
- 가. 제1범죄(상해)

[유형의 결정] 폭력범죄 > 01. 일반적인 상해 > [제1유형] 일반상해

[특별양형인자] 감경요소: 처벌불원(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)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: 공무집행방해의 경우

[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] 기본영역, 징역 4월~1년 6월

2022-10-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나. 제2범죄(공무집행방해)

[유형의 결정] 공무집행방해범죄 > 01. 공무집행방해 > [제1유형] 공무집행방해/직 무강요

[특별양형인자] 없음

[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] 기본영역, 징역 6월~1년 6월

다. 제3범죄(공무집행방해)

위 나.항 기재와 같다.

라. 제4범죄(모욕)

[유형의 결정] 명예훼손범죄 > 02. 모욕 > [제1유형] 일반 모욕

[특별양형인자] 없음

[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] 기본영역, 징역 2월~8월

마.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: 징역 6월~2년 9월(제1범죄 상한 + 제2범죄 상한의 1/2 + 제3범죄 상한의 1/3)

2. 선고형의 결정

피고인이 길을 가던 고등학생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을 협박하고,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.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.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한 욕설이나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다. 피고인은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, 모욕 범행의 피해 경찰관 F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위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.

다만,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.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, 상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 I과 합의하여 위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.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.

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환경,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,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파사 백승준

미주

[1] 1)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행시각이 위 나.항과 동일하게 2019.10.29.00:1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, 위 다.항기재 범행은 위 나.항 기재 범행이 종료된 이후임이 분명하고, 1의 진술 등에 의하면 그 범행시각이 2019. 10. 29. 01:03경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(증거기록 60, 245면), 이 부분 범행 시각을 위 본문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.